

1. 개정이유

도로 이용자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도로안전 시설이 효율적으로 설치·관리될 수 있도록 충격흡수시설 등 일부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 방법을 명확하게 하고, 점검 및 유지관리 중점 사항을 보완해 사고위험 저감 및 도로 이용자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 점검시 현광방지시설 손상 및 탈락상태를 확인하도록 하여 현광방지시설의 탈락으로 인한 2차사고 위험 경감을 도모함(안 제3편 제2호 2.7.1)
- 나. 도로 운전자 안전을 강화하고 구조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충격흡수시설 설치 시 후면 구조물의 폭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함(안 제3편 제3호 3.1.2)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제4호 4.3.4 나 중 “KS A 7715의”를 “점광원”으로 한다.

제3편제1호 1.2 중 “「도로법」 제8조에서”를 “「도로법」 제10조에서”로 하고, 같은 편 제2호 2.7.1 가 중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현광방지시설 손상 및 탈락 상태

제3편제3호 3.1.2 중 “구분된다.”를 “구분할 수 있고, 형태에 따라서는 일자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호 3.3.2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충격흡수시설 후면 구조물

제4편제3호 3.1.2, 같은 호 3.3, 같은 편 제5호 5.1.1, 같은 편 제7호 7.1.2, 같은 호 7.3.1, 같은 호 7.4.1, 같은 호 7.5.1, 같은 편 제8호 8.1.2, 같은 편 제9호 9.1.2 중 “「도로법」 제8조에서”를 각각 “「도로법」 제10조에서”로 하고, 같은 편 제10호 10.1.2 중 “「도로법」 제8조의”를 “「도로법」 제10조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년 5월 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경과조치) 부분개정 시점에서 이미 시행중인 건설공사 및 설계용역은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편 시선유도시설	제1편 -----
4. 표지병	4. -----
4.4 설치각도 및 설치간격	4.4 -----
4.3.4 반사성능 및 광도	4.3.4 -----
나. 점등형 표지병은 <u>KS A 7 715</u> 의 측정방법에 따라 광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가 아래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나. ----- <u>점광원</u> -----
제3편 차량방호 안전시설	제3편 -----
1. 총칙	1. ---
1.2 적용 범위	1.2 -----
이 지침은 「도로법」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도로에도 적용할 수 있다.	----- 「도로법」 제10조에서 -----
2. 방호울타리	2. -----
2.7 유지 관리	2.7 -----
2.7.1 점검	2.7.1 -----
가. 방호울타리	가. -----
① ~ ⑧ (생략)	①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u>현광방지시설 손상 및 탈락 상태</u>
3. 충격흡수시설	3. -----
3.1 기능 및 종류	3.1 -----
3.1.2 종류	3.1.2 ---

충격흡수시설은 기능에 따라 주행 복귀형과 주행 비복귀형으로 구분된다.

3.3 설치 장소 및 설치

3.3.2 설치

가. ~ 다. (생략)

<신설>

제4편 기타안전시설

3. 도로반사경

3.1 총칙

3.1.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도로법」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3 설치 장소

도로반사경은 「도로법」 제8조에서 정한 도로의 다음과 같은 구간에 도로·교통 상황과 지역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한하여 설치한다.

5. 낙석방지시설

5.1 총칙

-- 구분할 수 있고, 형태에 따라서는 일자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3.3 -----

3.3.2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충격흡수시설 후면 구조물

제4편 ----

3. -----

3.1 -----

3.1.2 -----

----- 「도로법」 제10조에서 -----.

3.3 -----

----- 「도로법」 제10조에서 -----

-----.

5. -----

5.1 ----

5.1.1 목적

이 지침은 「도로법」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7. 악천후구간, 터널 및 장대교량 설치 시설

7.1 총칙

7.1.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도로법」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 중 일반국도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도로에도 준용할 수 있다.

7.3 비, 눈 등으로 인한 위험구간

7.3.1 설치장소

이 지침은 「도로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 구간 중 비나 눈등의 기상 현상으로 인한 위험이 예상되어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시키고 운전자에게 양호한 주행환경의 제공이 필요한 구간에 적용한다.

7.4 터널

7.4.1 설치장소

이 지침은 「도로법」 제8

5.1.1 ---

----- 「도로법」 제10조에서 -----
-----.

7. -----

7.1 ---

7.1.2 -----

----- 「도로법」 제10조에서 -----

-----.

7.3 -----

7.3.1 -----

----- 「도로법」 제10조에서 -----

-----.

7.4 ---

7.4.1 -----

----- 「도로법」 제10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상에 건설하는 터널에 적용한다.

7.5 장대교량

7.5.1 설치장소

이 지침은 「도로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상에 건설하는 교량 중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최대 경간장이 50미터 이상인 교량과 연장이 500미터 이상의 교량에 적용한다.

8. 긴급제동시설

8.1 총칙

8.1.2 적용 범위

본 지침은 「도로법」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 중 일반국도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도로에도 준용할 수 있다.

9. 노면요철포장

9.1 총칙

9.1.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도로법」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중 일반국도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조에서 -----

-----.

7.5 -----

7.5.1 -----

----- 「도로법」 제10
조에서 -----

-----.

8. -----

8.1 -----

8.1.2 -----

----- 「도로법」 제10조
에서 -----

-----.

9. -----

9.1 -----

9.1.2 -----

----- 「도로법」 제10조
에서 -----

<p>하되, 기타 도로에도 준용할 수 있다.</p> <p>10. 무단횡단 금지시설</p> <p>10.1 총칙</p> <p>10.1.2 적용 범위</p> <p>본 지침은 「도로법」 제8조의 도로 중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시지역 도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p>	<p>-----</p> <p>-----.</p> <p>10. -----</p> <p>10.1 -----</p> <p>10.1.2 -----</p> <p>----- 「도로법」 제10조의 -----</p> <p>-----</p> <p>-----.</p>
--	---